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2024. 10. 8.(화)

순서	검토안건	제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선미 의원 외 10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한선미 의원 외 10명
- 제안일 : 2024. 9. 27.
- 회부일 : 2024. 9. 30. (의안번호 : 24-119)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등 마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마포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12조)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입법예고 : 2024. 9. 20. ~ 9. 26.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5. 검토보고

○ 조례의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등 마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구 차원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하안전 관련 시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제5조 ~ 제1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책 및 기술,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토록 함.
- 특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9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제13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구청장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강화함.

- 제14조(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 정산)

- 구청장이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정기 안전점검 중 공동조사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 차원의 일관된 조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정산하도

록 규정하여, 비용 부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조례의 타당성·합리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황

구 분	내 용
목 적	지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의 안전 확보
주요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의무) ② 지하개발 안전관리 ③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④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안전관리 ⑤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및 활용
조례위임 사 항	지방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부여
- 지하공간의 무분별한 개발, 노후 지하시설물의 관리 미비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국내 주요 싱크홀 사고 사례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싱크홀 사고(2020년)
- 광화문역 인근에서 약 1.5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도로가 통제되고, 인근 상점 및 건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상황 발생.
- 사고 원인은 지하시설물 노후화 및 누수로 인한 지반 약화로 밝혀졌으며, 지하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싱크홀 사고(2021년)
 - 삼성동 대로변에서 약 2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고, 추가 침하 우려로 인해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대피 조치가 이루어짐.
 - 사고 원인은 인근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로 밝혀졌으며,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반 안전 진단 및 보강 공사가 진행됨.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2024년)
 - 연희동 성산로 모래내고가차도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싱크홀이 발생하여 차량 한 대가 왼쪽으로 기울며 전복되어 거의 통째로 싱크홀에 빠졌고 차량 앞부분은 완전히 파손되었으며 인명피해가 있었음.
 -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도로의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가 추정됨.

- 부산시 사상구 싱크홀 사고(2024년)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사상 ~ 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두 대가 파손되었음.
 - 정부는 사고 지점에 대한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 현황과 부산시의 사고원인 조사 및 대응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임.

○ 자치구 조례 시행 현황

- 서울특별시 현황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 시장의 책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지하시설물 현장조사, 공동조사 대행 등 규정

- 마포구 현황

- 별도 조례는 없는 상황으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는 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 지하안전굴착팀에서 담당
- 법령에 따라 2024년 마포구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해 추진 중

※ 마포구 지하시설물 현황 [별표 1 참조]

구 분	합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차도	전기통신설비	전기설비	가스급시설	수송관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시설물	21	1	1	1	10	2	2	1	1	2

-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현황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4.9.30 기준)

연번	자치구	제정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위원회 정원
1	도봉구	2021.4.15.	의무	○(강행규정)	10명
2	동대문구	2021.9.30.	의무	○(강행규정)	10명
3	은평구	2021.9.30.	의무	○	10명
4	강남구	2023.5.19.	의무	○	10명

연번	자치구	제정일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 위원회 설치	위원회 정원
5	관악구	2023.9.25.	의무	○	10명
6	광진구	2021.9.13	의무	○(강행규정)	10명
7	동작구	2021.7.15.	의무	○(강행규정)	10명
8	서대문구	2024.5.8.	의무	○	10명
9	서초구	2022.10.26.	의무	○(강행규정)	10명
10	성동구	2022.11.10.	의무	○	10명
11	성북구	2021.12.31.	의무	○(강행규정)	10명
12	강북구	2018.3.23.	의무	○	10명
13	구로구	2020.4.9.	의무	○(강행규정)	10명
14	중랑구	2020.11.19.	의무	○	10명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지하공간의 무분별한 개발, 노후 지하시설물의 관리 미비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장조사와 공동조사 대행 등 구 차원의 지하안전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싱크홀 관련 사고가 매년 20건 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장은 순찰강화와 싱크홀 관련 민원 접수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점검을 통해 싱크홀 전조 증상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현장조사 결과의 실질적 반영, 공동조사 비용 정산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규칙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마포구 지하시설물 현황

분야	관리 기관	법적근거	연장(m) (시도+구도)		비고
			총 연장	안전점검대상 연장 (500mm 이상)	
상수도	서부 수도사업소	시설물안전법 수도법	320,786	9,456	
하수도	물관리과	하수도법	29,950	29,950	
지하차도	서울시시설공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65	565	
전기통신설비	KT신촌지사	소방시설법 전기통신사업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5,203	3,870	
	KT마포홍산지사		82,233	1,883	
	KT원효지사		25,954	505	
	KT서대문지사		19,635	-	
	KT 서울강북역 세스운용센터		1,990	1,990	
	LG유플러스		7,401	-	
	SK브로드밴드		56,374	-	
	㈜달라이브		1,935	-	
	세종텔레콤		1,413	0	
	드림라인(주)		5,263m (시도:4,603m /구도:660m)	0	
전기설비	한국전력공사 마 포홍산지사		4,787	4,787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16,177	86	
가스공급시설	한국가스공사 서 울지역본부	도시가스 사업법	14,286	10,988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법	366,341	없 음	
수송관(난방)	한국지역 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28,261	7,006	
도시철도시설	서울교통공사	시설물안전법	14,490m	12,340m (구도: 200m)	
철도시설	공항철도(주)	철도건설법	289	289	
	한국철도 시설공단		539	539	
합 계			1,153,872	84,254	

[별표 2] 관련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 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제10조 제1항및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